

## 2026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

「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조례」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. 1. 5.

전라남도지사

### 5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 지원

#### 1. 지원규모 : 20억원

- ※ 은행상담 후 자금 신청을 하여야 하며,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(보증서 등) 제공이 있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음.
- ※ 지원규모는 자금별 수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.

#### 2. 지원대상

- 지원대상 업종
  - 지원 신청일 현재 도내에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
  -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도·소매업 및 상품중개업자
  - 프랜차이즈 본부 및 가맹점(유통업에 한함)
  - 전통시장, 중소백화점·쇼핑센터 등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

#### 《지원 제외 대상》

- 국세·지방세 체납중인 기업
- 휴·폐업중인 업체
-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(시설자금) 이용 중이거나, 당해연도 추천 후 대출하지 않은 기업(단, 이용한도가 남은 기업은 한도 내 이용 가능)

- 당해 연도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시설자금 수혜기업
-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접수일 기준 최근 5년간 정부기관 및 지자체 등의 지원금액(사업분야 : 금융)과 본 신청 건을 포함하여 지원금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
  - ※ 금융 중 보증/보험 제외
- 기타 자금지원 관련 규정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업체

#### 《연속지원 제한》

- 시설자금 상환 후 2년 이내, 운영자금 상환 후 1년 이내 융자 지원 제한

#### 3. 지원내용

구 분	지원사업	융자금액	융자기간	융자이율
시설 투자	○ 전문상가 건립	4억원 이내	3년거치 5년 분할상환	연3.0% (변동금리) - 정부정책자금 기준금리에 따라 분기별 변동 금리 적용
	○ 전문상가 시설개선			
운영 자금	○ 공동창고 건립	1억원 이내	1년거치 2년 분할상환	
	○ 점포시설개선	1억원 이내		
	○ 경쟁력강화 및 경영활성화 자금	1억원 이내		

#### 4. 지원신청 : 반기별 접수(공고일 ~, 7. 1. ~)

#### 5. 접수방법 : 온라인 접수

-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자금시스템(<http://www.jfund.kr>)
- 문 의 처 : 061-288-3832~4 (기업육성팀)

#### 6. 구비서류

##### ① 공통서류

- 가. 자금신청서(별지 제1호), 사업계획서(별지 제2호), 정보이용동의서(별지 제4호) 각 1부(원본)
  - ※ 법인인 경우 반드시 법인도장 날인, 개인사업자 중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전원 도장 날인
  - ※ 운전자금만 신청시 사업계획서 미제출 가능
- 나. 대출상담확인서(별지 제3호) 1부(원본)
- 다. 사업자등록증 1부(사본)

라. 사업장 확인서류 1부(사본)

- 자가 : 건축물대장(소유자 확인 필요)
- 임대 : 임대계약서 + 건축물대장(소유자 확인 필요)
- ※ 법인인 경우, 사업장 소유자가 대표자일 때 법인과 대표자간 임대차계약서

마.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최근 1개년 재무제표(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원-국세청 홈택스 발행분) 1부

※ 결산이 완료되기 전인 1~3월경까지는 법인도 전년도분에 한해 부가가치세과 세표증명원으로 대체 가능하나 전전년도 재무제표 제출 필수

② 사업별 추가 구비서류

가. 전문상가 시설개선사업

- 전문상가 관리 법인 또는 입점상인 단체를 증명하는 서류 1부
- 입점상인의 시설 개·보수 동의서
- 개·보수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, 계약서, 견적서 1부

나. 전문상가 및 공동창고 건립사업

- 전문상가 관리 법인 또는 입점상인 단체를 증명하는 서류 1부
- 토지등기부등본, 건축허가서 1부
-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, 건축시공 계약서 사본, 설계내역서, 건축도면 각 1부

다. 점포시설개선사업 : 개·보수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, 계약서, 견적서 각 1부

라. 운영자금 : 매입세금계산서/합계표(신청금액 상당액, 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표지 포함), 매입처 사업자등록증(신청금액 상당액 해당업체) 사본 1부

7. 지원업체 선정

○ 「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」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제외 대상업체 및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용자대상 업체 선정

8. 대출기한 :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

- 지원 결정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실행을 완료하여야 함.
- 대출기한 내에 기업체가 기한연장을 신청할 경우 1회에 한하여 2개월 연장 가능(대출 진행 중이거나 공장시설 공사가 진행 중인

업체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)

- 대출기한 내에 용자를 받지 못한 경우 실효되며, 당해 연도 재추천 불가

9. 대출 취급은행

- 취급은행(9개) : 광주, 기업, 산업, 국민, 하나, 신한, 우리, 농협(광주·전남본부), 수협(광주본부)
- ※ 기금관리은행(광주은행)과 전대 약정 미체결 은행은 취급은행에서 제외

10. 제재 및 환수 사항

- 지원 용도 외 자금 사용(임대수입, 용도전환, 후속계획 미이행 등) 기업은 해당자금에 대하여 전액 회수 및 향후 3년간 용자 추천 제한
  - 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용자금을 (신청)지급 받은 경우
  - ② 신청·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에 용자금을 사용한 경우 (사업장 매매임대 등 수익 향유, 특수관계인 간 계약 등 거래, 업종 변경내역 미신고 등)
-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 기업별 사업 결과보고서 제출(별지 2-1)을 의무화 하고, 미제출 기업에는 당해연도와 다음연도 재신청(지원) 제한

11. 기타사항

- ① 공고 내용 이외의 사항은 「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」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, 2026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계획에 의하며,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
- ② 접수 후 심사 과정에서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.
- ③ 추천 및 대출 실행 후 거래은행, 상호 및 대표자 등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신청서(별지 제5호 서식)를 작성하여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함.
- ④ 신청 서식은 전남도청,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
  - ※ 전남도청(<http://www.jeonnam.go.kr>) : 분야별 정보 → 일자리·경제 → 기업지원 → 자금지원
  - ※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(<http://www.jepa.kr>) : 자금지원 → 자금지원 공고
  - ※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자금시스템(<http://www.jfund.kr>) : 정보광장 → 공지사항
- ⑥ 온라인 접수 후 심사과정에서 필요한 추가요청자료를 1개월 이내에 보완하지 못할 시 신청이 취소됨
- ⑦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(061-288-3832~4)로 문의하시기 바람.





